

하장면 댓재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국유림 대부 허가 촉구 건의문 (제11회 임시회시 채택)

지난 '93년부터 삼척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 57-1번지 일대의 댓재공원 조성사업이 국유림
관리기관인 산림청으로부터 현행 산림법상 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는 목적용도 등에 불부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대부불가
처분을 받게되어,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소식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갈망하고 있던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대다수 삼척 시민들 가운데 정부의 행정편의 위주의 획일적인
산림정책에 대한 원성어린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어,
지역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댓재공원 조성사업 박차를
위한 국유림 대부 허가 촉구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태백산맥의 분수령으로 해발 810m의 정상부를 가진 맷재 정상일대는 35번국도와 424호 지방도가 접하는 연결교통망의 주요 접경지이며,

인근에는 태백산맥의 주봉인 두타산과 청옥산, 천음산 등 명산이 즐비하여 등산하기 좋은 시종점지역으로써 계곡과 기암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등산로 및 자연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옛부터 내륙지방의 선인들이 왕래하던 맷재옛길, 산신각과 함께 천은사, 영경묘, 준경묘 등 향토문화 유적지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매년 두타제 행사시 제례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동해 남부지역의 토속신앙의 근원지로서 역사 기행과 종교신앙에 대한 답사와 순례가 끊이지 않아 오래전부터 국민문화 공간으로의 관광명소로 부각되어 오던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맷재정상 일대를 공원화하여 이곳을 넘나드는 관광객 및 통행인들에게 편의 휴식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등산로 및 산책로 개발, 산림욕장·휴양림 조성, 눈썰매장시설 등을 조성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인근의 대이동굴, 초당·맹방관광지 및 태백권의 산악 관광지와 연계한 4계절 환상관광지 개발을 착실히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침체일로에 있던 탄광지역과 이농등으로 공동화현상 마저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위기감이 전지역에 확산된 가운데 이지역 주민 모두는 맷재공원 조성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었으나,

정부에서 법을 운운하며 각종 지역개발 행위를 제한하여 주민의 기대와 여망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 자체를 무시한, 민의를 말살하려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맷재공원 조성사업이 자연 및 문화자원의 보존, 휴양수련장 활용 그리고 지역개발적인 면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공익성과 지역개발이라는 양면을 고려하여 입안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공공사업목적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느니, 관련법에 명시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차에 걸쳐 대부불가 처분을 한 행위는 정부정책이 아직까지도 구시대의 유물인 행정편의 위주의 구태의연한 정책집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제 더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문민정부의 역할은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에 있는 만큼, 다수지역 주민의 희생과 불이익을 주는 정책집행은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 주민 생존권과도 결부된 맷재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이 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국유림 대부불가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지연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산림청등 관계부처에서는 이점 냉철히 직시하여 다시한번 제반사항을 종합 면밀히 재검토하여 맷재공원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대부 허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오며,

만부득이, 향후 종합적인 국유림관리면에서 대부를 해 줄수 없다면 우리시로서는 맷재공원 조성사업이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대안으로 산림청에서 눈썰매장, 토산품 및 농·림축산물 판매장, 기타 편의시설등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우리시에 임대하여 줄 것을 우리 10만 삼척시민과 삼척시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적극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며,

만약, 국유림 대부허가 또는 대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급 사회단체 및 주민과 연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경 대응할 것임을 첨언드립니다.

1996년 2월 14일

강원도 삼척시의회 신상균의장 외 14인 의원일동

산 림 청

우 (130-012) 서울 동대문 청량리 207/ (02) 961-2422~5/ (전송) 961-2755/ 담당 : 장금환

문서번호 관리 52630 - 138

시행일자 1996. 3. 17. (년)

수신 삼척시의회 의장

제목 국유림 대부 촉구 건의에 대한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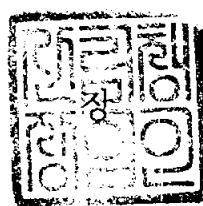
1. 삼척시 의회 13130 - 43('96. 2. 14)호와 관련됩니다.

2. 귀 의회에서 강원·삼척·하장·번천 산57-1 번지등의 국유림 (3.5ha)을 "댓재 공원 조성사업" 목적으로 삼척시에 대부해 주기를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부하여 드릴 수 없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정에서는 한반도의 대동맥인 백두대간(백두산 -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속리산 - 지리산)을 보전하여 국토사랑정신을 함양하고 국토의 소중함과 우리나라 산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백두대간주변 산림보전·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따라 백두대간은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그 주변산림은 형질변경이나 타용도전용은 물론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끝.

산 림 청



산림경영국장 전결